

성남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성남시 고시 제2020-338호(2020.12.3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성남시 고시 제2022-236호(2022.12.24.)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성남시 고시 제2023-297호(2023.12.2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성남시 고시 제2026-80(2026.04.06.)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의 「성남 수진1 재개발 정비구역」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이 소유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성남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261,789.4㎡)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4.12.27.)로부터 72개월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및 지번									
토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총 121필지									
	1-1	1-2	85	86	87	88	90	90-1	129	130
	294	371	414	426	454	496	595	601	631	661
	664-2	751	810	857	938	950	1162	1194	1214	1224
	1272-1	1273-1	1274-2	1275	1285	1286	1287	1289	1290	1290-1
	1291	1300	1300-1	1300-2	1301-1	1338	1361	1372	1418	1428
	1497	1613	1638	1639	1640	1646	1680	1757-1	1800	1801
	1802	1803	1816	1843	1850	1873	1896	1949	1979	2005
	2006	2019	2022	2030	2220	2039	2041-1	2048	2102	2116
	2134-1	2135-1	2147	2152	2155	2161	2176	2178	2193	2197
	2198	2211	2212	2203	2204	2205	2216	2216-1	2226	2275
	2345	2346	2393	2428	2430	2493	2496	2610	2679-3	2679-13
	2679-15	2679-17	2679-31	2693	2710	2810	2848	2850	2879	2903
	2919									
물건	사업지구 내 현금청산 대상 소유 물건 일체 및 영업권 등									

안내 사항

- 1) 추후 기본조사, 지적측량(분할 등),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 세부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본 공고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세부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 LH홈페이지(<http://lh.or.kr>) ⇨ 사업소개 ⇨ 도시조성사업 ⇨ 손실보상 ⇨ 보상공고
- 3)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및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6.18.(목) ~ 2026.7.3.(금) 10:00 ~ 17:00

- ※ 열람기간 중 중식시간(12:00~13:00) 및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 ※ 보안상 건물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니 **방문 예정시** 아래 연락처로 **반드시 사전 연락 바랍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보상판매3팀**
 - 주소 :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8층
 - 전화번호 : 02-6400-5951 (사전연락 필수)
- **열람 장소 : 성남시청 도시정비국 재개발과 재개발1팀**
 - 주소 : (13437)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여수동)
 - 전화번호 : 031-729-4422 (사전연락 필수)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열람이 불가하며, 다만 소유자 위임장 제출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보상판매3팀에 등기우편제출 또는 서면제출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는 LH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보상시기 : 2026년 9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2인 또는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본 건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보상판매3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하여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 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매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라.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보상판매3팀(☎: 02-6400-59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본 공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